

『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·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,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없이 ‘주민등록번호’를 수집·이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의 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」 등 14개 조례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는 별지 서식 22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·수집하거나 삭제처리
 -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(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.)
 -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.)
 -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.)
 - 구미시 상징물 조례(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.)
 -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.)
 -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별지 제1호서식

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9 및 별지 10과 같이 한다.)

-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(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.)
-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2 및 별지 13과 같이 한다.)
-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(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 14부터 별지 16까지와 같이 한다.)
-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(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.)
-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(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18과 같이 한다.)
-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(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 19 및 별지 20과 같이 한다.)
-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(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21과 같이 한다.)
-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(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2와 같이 한다.)
- 「구미시 상징물 조례」의 별지 서식 1건에 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항목 삭제
-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별지 서식 1건에 개인정보수집 필수 고지항목 추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투자통상과, 교통행정과, 기획예산담당관, 홍보담당관, 안전재난과, 주민복지과, 청소행정과, 농정과 및 하수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2016. 3. 29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고 있는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14개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
-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,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